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장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하천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 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입법 미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1.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지역
2.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인접지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 ----- ----- 다음 <u>각 호</u> ----- ----- -----.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지역 2.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u>인접지역</u>